



- ⑥ 정기노회 상황보고서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노회들에 대해 빠른 제출을 독촉키로 하다.
- ⑦ 21당회 미만으로 보고한 4개 노회(경기동부, 군산동, 서광주, 평북)은 제105회 총회결의에 의거 제106회 총회 때 읍서버 자격임을 통지키로 하되, 읍서버 인원을 2인(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보고한 경기동부노회, 서광주노회는 읍서버 인원을 조정하여 재보고 지시키로 하다.
- ⑧ 당회수 대비 총회헌법에서 규정하는 인원을 2명(목사 1명, 장로1명) 초과하여 보고한 경성노회, 경서노회, 대전중부노회는 총대수를 조정하여 재보고 지시키로 하다.
- ⑨ 당회수 대비 장로총대를 미보고한 경기중앙노회에 대해서 장로총대를 보고토록 지시키로 하되, 총대인원이 미달하여도 노회상회비 등은 총회헌법에 규정된 인원으로 납부해야 함을 통지키로 하다.
- ⑩ 총회헌법을 위반하여 동일 당회에 장로총대 2명을 보고한 경성노회 예담교회 소속 강춘복 장로 및 정순태 장로는 당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총대 1번으로 교체 지시키로 하다.
- ⑪ 총회헌법을 위반하여 동일 당회에 장로총대 2명을 보고한 미주서부노회 나성열린문교회 소속 김춘경 장로 및 이병선 장로와 LA사랑의교회 소속 나익순 장로 및 조상운 장로는 당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총대 1번과 2번으로 교체 지시키로 하다.
- ⑫ 보고된 총대 중 소속 교회가 아직 총회전산에 등록되지 못한 미주서부노회 나성서부교회(총대명 윤능구 장로)는 해당 노회로 하여금 정한 기일까지 교회 등록을 완료케 하되, 교회 등록 불가 시 부총대 1번으로 교체 지시키로 하다.
- ⑬ 교회 미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미주동부노회 뉴욕밝은빛교회(총대명 김상근 목사, 김영한 장로), 필라동지교회(총대명 이영근 장로, 장병기 장로)에 대해 해당 노회로 하여금 정한 기일까지 교회 등록을 완료 지시키로 하되, 이들 장로총대의 소속 당회도 중복되어 총회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총대보고서를 재 작성 제출 지시키로 하다.
- ⑭ 교회 미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중부노회 감대규 장로에 대해 동제주베들레헴교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베들레헴교회(경기 화성) 시무장로로 등재되어 있어 동일 당회원인 장영수 장로와 총회총대가 중첩되므로 이를 정리하여 재보고 지시키로 하다.
- ⑮ 목사 정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이미 은퇴를 한 구미노회 이기택 목사와 수원노회 송종완 목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부총대 1번으로 교체 지시키로 하다.
- ⑯ 부총대 자격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노회의 형편으로 인해 일회적으로 총대를 허용한 제주노회 민경민 목사에 대해 비록 부총대이지만 추후 보고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목사회원으로 부총대를 변경 지시키로 하다.
- ⑰ 노회장을 총대로 선출하지 않은 경천노회와 관련하여 이는 천서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 ⑱ 경성남노회 조직교회 보고 중 순천선평교회와 범안교회는 현재 화해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경성남노회 소속 조직교회로는 볼 수 없겠으나, 이들 교회를 제외할 경우에도 보고된 총대인원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26당회 총대인원 8명) 다루지 않기로 하다.
- ⑲ 동서노회 조직교회 보고에서 보고된 당회원 중 은퇴한 시무장로가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천서 문제가 아닌 총회 행정상의 문제이므로 서기부로 이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⑳ 분립노회에 대해서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아직 미보고된 가칭 동목포노회에 대해서는 속히 보고를 지시키로 하다.

- 경기북노회 (목사) 박광필 김형수 서재운 김영복  
(장로) 곽익수 이계덕 이천규 정윤구



- 가칭 강북노회 (목사) 권혁주 윤두태 육수복 이찬영 이충원  
(장로) 민경보 신후방 이상용 한수길 한명대
- 목포서노회 (목사) 강춘석 송귀옥 이형만 홍석기  
(장로) 서재완 문동배 송영문 서영호
- ㉑ 시무장로 자격과 관련하여 순천노회 박병선 장로 및 허석구 장로의 문제는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하다.
- ㉒ 삼산노회 목사총대 문동현 목사의 노회 소속 문제 및 조직교회 보고와 관련하여 삼산노회 산하 조직교회들의 총회전산에 등록 현황을 유인물과 같이 보고 받으니, 내용이 복잡하므로 더 검토하여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하다.
- ㉓ 함경노회 장로부총대 이상철 장로(혜린교회 소속) 및 조직교회 중 혜린교회와 성석교회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더 검토하여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하다.
- ㉔ 충남노회 건은 현재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비송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차기 회의 때 갖기로 하다.
- ㉕ 차기 회의는 7월 26일(월) 전주양정교회에서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철폐를 위한 총회 대책회의 및 기도회’ 행사 이후(대략 오후 4시쯤)에 갖기로 하다.

###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 7. 26(월) 15:40

☞ 장 소 : 전주양정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총대변경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 가. 수원노회 송종완 목사 代 이상복 목사 (원로목사)
  - 나. 중서울노회 조운성 장로 代 박정수 장로 (개인사정)
  - 다. 황서노회 김병태 목사 代 김신근 목사 (개인사정)
  - 라. 미주서부노회 윤능구 장로 代 이상혁 장로 (교회등록)
  - 마. 진주노회 홍문석 장로 代 김춘옥 장로 (입원)
- ③ 순천노회 박병선 장로와 허석구 장로의 시무장로 자격 문제는 현재 ‘순천노회 수습 총회임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다.
- ④ 삼산노회 산하 조직교회와 관련하여서는 교회정보변경 및 교회등록을 삼산노회에 지시키로 하되, 경인노회(나누리, 넘치는, 새언약, 밀알, 새산성, 성광, 송림중앙, 작전염광, 한솔, 한빛)와 경기중부노회(매그너스) 및 경남동노회(새생명)에 원노회에 해교회의 삼산노회 가입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토록 하고, 8월 27일(금)까지 교회등록 및 처리가 완료된 조직교회에 한하여 총대인원을 인정키로 하다.
- ⑤ 함경노회의 부총대 및 조직교회 관련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⑥ 충남노회의 비송사건 건도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⑦ 차기 회의는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하다.

####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1. 8. 10(화) 19:00

☞ 장 소 : 속초켄싱턴호텔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총대변경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가. 중서울노회 이성무 목사 代 신현수 목사 (개인사정)  
나. 경성노회 정순태 장로 代 안철홍 장로 (당회중복)  
다. 구미노회 이기택 목사 代 최문선 목사 (은퇴목사)
- ③ 총대보고 시 목사총대 인수정보 및 장로총대 임직정보를 미보고한 동서노회에 대해 이번 금요일(8/13)까지 기한을 주되, 미보고시 천서를 보류하기로 하다.
- ④ 목사 인수정보와 관련하여 해당노회로부터 답변을 요청한 전북남노회 임철제 목사에 대해 노회가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니, 2005년도 합동 당시 개혁 측 정회원 명단에서 임철제 목사가 누락되었다는 전북남노회의 주장을 인정하여 천서하기로 하다.
- ⑤ 21당회 미만으로 읍서버 참석 대상이지만 읍서버 참석인원을 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조정하여 보고하지 않는 서광주노회에 대해 우선 보고된 서열에 따라 읍서버 참석자를 박종일 목사와 박민규 장로로 인정하되, 8월 27일(금)까지 조지교회가 합법적으로 전산에 추가 등록을 완료하여 21당회를 충족할 경우 원래 보고한 총대인원 6명(목사 3명, 장로 3명)을 인정기로 하다.
- ⑥ 뉴질랜드노회와 관련하여 비록 21당회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까지는 특수노회로 인정하였지만, 제105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앞으로 모든 21당회 미만노회는 읍서버 노회로 인정기로 하다.
- ⑦ 38당회로 총대인원을 12명(목사 6명, 장로 6명)을 보고하여 총대인원을 초과 보고한 경상노회에 대해, 8월 27일(금)까지 1개의 조지교회를 추가하여 합법적으로 총회전산에 등록을 완료할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 총대인원 12명을 인정하기로 하다.
- ⑧ 동일 당회에 장로총대 2명을 보고한 미주서부노회에 대해 장로총대 서열대로 나성열린문교회 김춘경 장로 및 LA사랑의교회 나의순 장로를 천서하기로 하되, 8월 27일(금)까지 장로총대를 자격 충족자들로 재보고할 경우 허락하기로 하다.
- ⑨ 미주동부노회와 관련하여 총회전산에 소속 교회가 미등록된 뉴욕밝은빛교회 김상근 목사와 김영한 장로 및 필라동지교회 이영근 장로와 장병기 장로는 천서를 불허하기로 하되, 해당 교회들이 8월 27일까지 총회전산에 등록을 완료하고, 필라동지교회 이영근 장로와 장병기 장로 중 1명을 장로부총대 1번과 교체할 경우 허락하기로 하다.
- ⑩ 경기중부노회 김대규 장로와 관련하여 해당 노회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으므로 천서를 보류하기로 하다.
- ⑪ 총대명단을 다시 제출한 개성노회와 관련하여 접수된 명단을 확인하고, 총회전산에 미등록된 새소망교회(장로총대 전영호 장로)에 대하여 8월 27일(금)까지 합법적으로 총회전산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천서하기로 하다.
- ⑫ 가칭 동목포노회의 총대보고를 받기로 하다.  
(목사) 김정두 이명운 박상옥 (장로) 김대주 이현옥 이현조
- ⑬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의 총대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제100회기 총회임원회 결의에 따라 불가함을 확인하다.



- ⑭ 부총대 변경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은 제주노회에 대해 민경민 목사는 부총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제주노회에 통지하기로 하다.
- ⑮ 21당회 미만 오피서버 참석자 및 해당 노회의 세례교인헌금 납부와 관련하여 세례교인헌금 납부는 총회 소속 교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오피서버 참석자의 소속 교회는 세례교인헌금을 100% 납부해야 총회장소로의 입장을 허락하기로 하다. 단, 노회별 세례교인헌금 목표액 50% 이상 납부 원칙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 ⑯ 평양노회에서 보고한 총대 중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와 관련하여 천서 확정을 미루기로 하다.
- ⑰ 충남노회 건은 현재 비송사건이 진행 중이고 어느 측이 적절한 충남노회인지 결정할 수 없어 천서를 보류하기로 하다.
- ⑱ 시무장로 자격과 관련하여 순천노회 박병선 장로 및 허석구 장로에 대해 현재 순천노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노회의 천서를 보류하기로 하다.
- ⑲ 함경노회의 조직교회 보고 중 혜린교회(김낙주 목사) 및 성석교회(편재영 목사)와 장로부총대 보고 중 혜린교회 소속 이상철 장로에 대해 그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다.
- ⑳ 남서울노회에서 탄원한 교육부장 입후보자 서울한동노회 김상기 목사의 천서 중지 요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노회 내에서 어떠한 이의도 없고, 해당 탄원 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다.
- ㉑ 차기 회의는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하다.

[첨부] ※ 제106회기부터 적용 예정

## 천서시행 행정 매뉴얼

### 1. 천서위원회 임무

- ① 봄정기노회 이전(매해 2월 말) 각 노회 서기에게 '총회천서관련 통지사항' 통보
- ② 각 노회에서 보고(또는 변경)된 총대의 확인 및 승인
- ③ 미자격자(또는 노회) 확인 및 총대 불허(단, 미자격자의 경우 해당 노회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 ④ 총회의 결의 및 정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또는 노회)에 대한 총대 불허(단, 인사의 경우 해당 노회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 ⑤ 천서와 관련하여 총회로 접수된 투서 및 진정서 등에 대한 판결 및 총대 승인 여부
- ⑥ 사고노회 판단 및 화해 조정 업무
- ⑦ 총회규칙 제8장 제27조의 회원 명부(총대 명단) 확정 - 총회 전 절차책자 발간
- ⑧ 총회 당석에서의 총대 천서 결과 및 참석 인원 보고(분립 노회 인원 포함)

2. 봄정기노회가 시작되기 전(매년 2월 말 경)에 각 노회마다 '총회천서관련 통지사항'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발송한다.

3. 각 노회들이 봄 정기노회를 시작하기 전(매년 2월말 경)에 각 노회들에게 노회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및 양식을 보내고, 총회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 4. 노회상황보고서 구성

- 가. 노회상황보고 작성요령
- 나. 노회임원명단보고
- 다. 노회총대보고
- 라. 노회총대주민등록증사본보고서 - 단, 최근 6년 내에 총대 경력이 있을 경우 제외
- 마. 당회조직교회현황 보고
- 바. 미조직교회현황 보고
- 사. 노회상황보고
- 아. 총회실행위원 보고

5. 총대인원 산출은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거 허락하되, 당회수 기준은 봄 정기노회를 시점으로 보고한 '당회조직교회현황 보고'에 근거하며, 이후에 추가 보고되는 당회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각 노회로부터 보고된 총회총대 중 봄 정기노회를 시점으로 소속 교회가 총회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총대로서의 자격이 안 됨을 원칙으로 한다.(추가)



6. 총대보고를 포함한 노회상황보고서는 총회개회 2개월 이전까지 접수를 받도록 한다. 단, 5월 말부터 미제출노회에는 속히 제출하도록 재촉 공문을 발송한다.
7. 7월 초가 되어 상당수의 노회가 총대보고를 상당수 완료하고 총회전산에 입력을 어느 정도 마치면, 전산실에 요청하여 총대명단 파일을 받고 총대명단 제작 작업을 한다. 총대명단에 필요한 항목은 노회, 성함, 직분, 상세직분(위임, 시무 여부), 교회, 생년월일, 목사임직노회 및 일자(편목의 경우 최초 가입 노회), 세례교인수, 지역구분(서울, 도시, 농어촌), 세례교인현금 목표액, 납부금액, 잔액, 납부율, 이행사항, 당회장, 총대서열, 교회주소 및 우편번호, 집주소 및 우편번호, 교회 및 집 전화번호, 핸드폰 정보 등이다.
8. 천서 문제와 관련된 모든 투서 및 진정서 등은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대로 공문을 시행한다. 단, 모든 투서 및 진정서는 8월 15일까지 접수된 것들만 다루고, 이후 접수된 새로운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
9. 총대들의 천서 판단은 당해년도에 모든 노회에 제공된 ‘총회천서관련 통지사항’을 근거로 하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
  - ① 총회헌법
  - ②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추가)
  - ③ 총회결의
  - ④ 지난 천서검사위원회 회의결의
  - ⑤ 총회임원회의 결의 또는 지시 사항
  - ⑥ 상비부 또는 타 위원회의 요청 사항
  - ⑦ 당사자들의 합의
  - ⑧ 사회법 및 법원 또는 검찰 등의 판결
  - ⑨ 기타
10. 총회 개회 1개월 전 절차위원인 총회장과 서기는 총회 회의순서를 정하되, 총대명단, 총회규칙 및 일정 기간 동안 정리된 현의안을 총회회의순서 책자에 함께 게재하여 모든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11. 총대들의 원활한 공천 배정 및 총회준비를 위해 공천회의 자료 작성 전(8월말)까지 천서유보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2. 총대 변경은 봄정기노회에서 선출된 부총대로 하되, 차점순(또는 다득점순)으로 우선 보고를 받아야 한다. 만일 후순위자로 변경 요청 시 선순위자들의 총대자격 포기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봄정기노회에서 부총대를 선출하지 않을 경우 총대를 변경할 수 없다. 보고 양식은 총회양식으로 하되, 노회의 공문 양식도 인정한다.
13. 총대변경은 총회개회일로부터 14일 전까지로 제한한다.(팩스 수령 가능) 단, 위원회의 심의로 인해 총대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인사에 한해 총회 당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으로서의 변경은 허락하되, 총회 진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인원을 최소로 해야 한다.

14. 총회 개최 전 당일 본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총대명단을 근거로 총대출석부를 만들어 모든 노회에 배부하고, 노회로부터 출석 표기된 사항을 정리하여 총회 개최 공포 전 총회서기가 참석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통계표를 만든다.
15. 본 위원회에서 결의된 주요사항 및 총대들의 허락이 필요한 미진 안건을 정리하여 총회서기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한다.
16. 확정된 총대 명단은 총회장소 출입 통제, 선거인 명부 및 전자투표, 세례교인헌금 납부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총회개회 삼일(선거인 명부 입력 준비는 일주일) 전에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